#### 목포시 공고 제 2019-594호

###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

「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. 4. 29.

# 목 포 시 장

#### 1. 자치법규명

O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

#### 2. 제정이유

- 사회적경제 조직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)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령 및 지침에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경제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 제정 필요
-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
- O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

### 3. 주요내용

O 안 제1조~제3조 : 조례제정 목적, 용어 정의, 기본원칙

O 안 제4조~제6조 : 시장책무, 사회적경제조직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

○ 안 제7조~제12조 :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·기능·위원회·운영 규정,

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, 회의록 등

O 안 제13조~제15조 : 사회적경제활설화 계획수립, 기업발굴, 지원센터

설치 · 기능 · 위탁

O 안 제16조~제19조 : 재정지원, 우선구매 촉진, 민간기업 참여, 홍보

O 부칙(조례 폐지) : 「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, 「목포시 협동

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(부칙 안 제2조)

#### 4. 제정 조례(안) : 별첨

#### 5. 의견제출

○ 제출 기한 : 2019년 5월 20일까지

O 제출 방법 : 우편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
O 의견 제출시 기재내용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- 기타 참고사항 등

O 의견서 제출처 :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

- 주 소 :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

- 전 화 번 호 : 061-270-8789

- 팩 스: 061-270-8791

- 직 접 방 문

#### 6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mokpo.go.kr">http://www.mokpo.go.kr</a>)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(270-87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고,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,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사회적경제"란 삶의 질 증진, 빈곤·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, 교환,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.
- 2. "사회적경제 조직"이란 목포시(이하 "시"이라 한다)에 소재하고,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재화·서비스를 생산, 교환,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.
  -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  - 나.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,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, 지역사회 공헌 등 사업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전라남도가 지정한"예비사회기업"
  - 다.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 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"마을기업" 또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"예비마을기업"
  - 라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"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"
  - 마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8조에 따른 "자활기업"
  - 바.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,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,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 하는 "사회적경제지원센터"
  - 사.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

- 3. "취약계층"이란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.
- 4. "사회서비스"란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 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
- 5. "연계기업"이란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 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
- 6. "사회적경제 생태계"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, 시장 조성 및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참여,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.
  - 1.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
  - 2.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
  - 3.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
  - 4.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
  - 5.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목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)**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  -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7조(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,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4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, 유관 기관,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8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 -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
  - 2.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, 활동가
  - 3. 윤리적 소비자 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
  - 4.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
  - 5. 시 공무원
  - 6.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
 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 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⑥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11조(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등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.
 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
  - 2.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  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 - 4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- 제12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(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내용)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13조(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(이하 "활성화 계획" 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
    - 2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  - 3.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  - 4.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 훈련·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
    - 5.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
- 6. 지역 특화 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
- 7.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
- 8.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, 시설 지원 등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
- 9.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·활성화 지원) 시장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·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  -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
    - 2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지원
    - 3.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
    - 4.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지원,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 지원
    - 5.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, 마케팅, 판로개척, 경영등 지원
    - 6.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·홍보 지원
    - 7.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
    - 8.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
  -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⑤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「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6조(재정 지원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, 시장은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, 지역 사회와 연대, 지역 사회 공헌 활동, 공동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「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」구축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17조(우선 구매 촉진)**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, 목표,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.
- 제18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 시장은 목포시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목포시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·민간기업·단체 간 교류·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
  - 2.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업 지원 확대
- 제19조(홍보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 - 1.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  - 2.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
  - 3. 주민 강좌,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
  - 4.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「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및 「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- 제3조(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및 「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